

연천군 7급 이하 임용후보자 실무수습규정 [2006. 1. 9] 훈령 제383호

일부개정 2011. 5. 6 훈령 제446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3. 1. 10 훈령 제470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3. 12. 12 훈령 제483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5. 2. 22 훈령 제492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 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7급 이하 일반직 임용후보자(이하 “수습자”라 한다)에 대한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제2조(기본방침) 수습자의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며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능력 및 행정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1. 일선행정의 집행업무부터 기획업무까지 체계적인 수습을 실시한다.
2. 지도·관리체계의 확립과 계획성 있는 수습으로 수습성과를 최대한 거양 하도록 한다.

제3조(수습자의 소속) 수습자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서로 한다.

제4조(수습기관) 수습자의 수습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직 수습자는 읍·면까지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수습기간) ① 수습자의 수습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수습기간 중에 실시된 교육훈련 기간은 수습기간에 포함하며,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 소멸 후에 제1항의 규정된 잔여기간을 수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습기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수습자의 의무) 수습자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군수 및 수습지도관의 지시에 순응하여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수습요령) 수습자는 배치된 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

습하며, 그 밖에 당해 기관장이 지시하는 지시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수습자의 순환배치) 수습지도관은 수습자로 하여금 해당 기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2월씩 순환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습기관의 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수습지도관은 수습자의 근무상황카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습일지를 비치 작성하여 수습자의 수습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10조(수습지도관의 지정) 수습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위한 각 기관별 수습지도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및 직속기관 : 실·과·원·소장
2. 읍·면 : 읍·면장

제11조(수습지도관의 임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수습지도관은 일정별 수습계획·수습방법·수습과 관련된 과제부여 등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수습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성적 불량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수습자의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실무수습자로서의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실무수습카드에 기록하고, 공무원 임용 시 인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수습중단 통보) 수습자가 실무수습 중 병역의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이 중단되거나 수습중단 사유가 소멸되어 수습이 지속될 경우에는 안전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제14조(수습카드의 활용) ① 수습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의하여 수습지도관이 책임 작성하여야 하며, 수습종료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수습자를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과 수습 종합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5조(수습상황의 평정) 수습자에 대한 수습상황의 평정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별 실무수습카드에 의하여 매월 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및 직속기관 : 평정자 주무담당주사, 확인자 실·과·원·소장

2. 읍·면 : 평정자 주무담당주사, 확인자 읍·면장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6 훈령 제446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연천군 7급 이하 임용후보자 실무수습규정」 제13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13. 1. 10 훈령 제470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연천군 7급 이하 임용후보자 실무수습규정」 제13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13. 12. 12 훈령 제483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연천군 7급 이하 임용후보자 실무수습규정」 제1조 중 “일반직 및 기능직 임용후보자”를 “일반직 임용후보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5. 2. 22 훈령 제492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연천군 7급 이하 임용후보자 실무수습규정」 제13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⑬ 부터 ⑳ 까지 생략

